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1. 합의 내용

- 남과 북은 8월 5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8월 28일(화)~30일(목)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1차: 8.2~3, 2차: 8.4~5) 비공개로 방북하여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였음.
- 북한은 8월 18일 최근 발생한 수해를 이유로 남북정상회담을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제의해 왔으며,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10월 2일(화)~4일(목) 개최하기로 하였음.

2. 의의

-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7·4 남북 공동성명」('72)→「남북기본합의서」('92)→「6·15 남북 공동선언」('00)으로 이어지는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흐름을 “평화번영”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임.

* 특히, 그동안 경협 · 사회문화 등 비안보분야 중심의 남북관계에서
안보와 비안보 분야의 균형 확보

-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을 양적 ·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
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 남북 교류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
는 계기가 될 것임.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 마련

-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장관급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경추위
△직십자 회담 등 분야별 회담들이 정례화된 바탕 위에서 이번에 최상
위 회담인 남북정상회담이 재차 개최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을 가능케하는 기초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지속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임.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기

- 「9 · 19 공동성명」과 「2 · 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남
북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양자를 동시에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이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핵 불능화 등 북핵문제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 능동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직접당사자로서의 위상 공고화

- 이번 정상회담은 현 시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 노력의 결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한반도 핵심 현안을 협의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을 남북이 주도적·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투명하게 추진

- △공식라인(국정원장-통전부장)을 통한 회담개최 협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한 특사 임명 △협의과정의 소상한 공개 등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시와 달라진 점임.
- 아울러 앞으로 정상회담 준비과정도 관련 법령과 제도적 틀에 의거 추진하게 될 것임. ◎

[참 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 만 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 양 건

제6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7월 24일(화)~26일(목)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음.
-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및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중점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하였음.
-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지난 50여년 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온 북방 한계선(NLL)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미 남북간 합의한 충돌방지 관련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합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며,
 - 북측은 북방한계선이 ‘불법무법의 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동일 면적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확대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
- 북측은 공동어로수역을 북방한계선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경제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남북 경협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하고, 쌍방이 이미 합의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며,
- 북측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북측이 제기한 해주직항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서해해상 충돌방지 개선 조치 및 남북경협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앞으로도 우리측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협 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현황

1. 추진경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 제10차 회의(2005.7.9~12, 서울)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경추위 제12차 회의(2006.6.3~6, 제주)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동 합의서는 열차시험운행 실시 후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경추위 제13차 회의(2007.4.18~22, 평양)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경공업 원자재 제공 시기를 당초 2006년 9월에서 2007년 6월로,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서 내부 발효절차 등을 보완한 것이 주 내용임.
-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2007.5.2~4)와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2007.5.22~23)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에서 개최

-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일부 합의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제2차 실무협의), 제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였음(제3차 실무 협의).
* 제1차 실무협의는 2005. 8. 24(수)~27(토)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이행기구 지정

- 정부는 5월 28일(월)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박홍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을 남북 경공업 ·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로 지정하였음.
- 이행기구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경공업 · 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실무 기술적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될 것임.
 - 경공업 협력과 관련하여 원자재 제공규모 · 가격 · 방식 등을 북측과 협의 · 확정하고, 원자재 구매 · 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 수행
 -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북협의,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 수행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누세제협회 등 경공업 및 지하자원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공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통일부 허가 법인

3.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 제1차 실무협의

- 남과 북은 6월 7일(목)~8일(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쌍방은 △지하자원 개발관련 현지 공동조사 일정 및 자료제공 △경공업 원자재(신발·의류·비누) 제공 가격 및 품질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 세부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이행기구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동 실무협의에는 우리측 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 이행기구인 명지총회사가 참가하였음.

▣ 제2차 실무협의

-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제2차 실무협의」를 7월 5일(목)~6일(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에서 개최 하였음.
- 남북은 △의복류, 신발, 비누 등 8천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 △3개 광산(검덕, 용양, 대홍)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7.19), 현지 공동 조사(1차: 7.28~8.11, 15명, 2차, 3차 조사) 등에 합의 하였음.

▣ 경공업 원자재 제1항차 출항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합의서」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 제1항차분(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7월 25일(수)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를 통해 북한에 수송하였음.
- 이번 첫 출항을 시작으로 섬유, 신발, 비누 등 3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95개 항목(섬유39, 신발49, 비누7)이 금년 11월말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제공 될 예정임.

▣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제1차 공동조사 실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북한 단천지역의

△검덕(아연) △용양 및 대홍(마그네사이트)등 3개 광산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를 북측과 공동으로 실시하였음.

* 당초 공동조사를 8월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단천 지역의 장마로 비행기 운행이 차질을 빚어 당초 계획보다 지연

- 이번 조사에서는 3개 대상 광산에 대한 매장량, 품위 등 지질조사와 함께 최근의 생산현황, 설비보유 실태 등 광산개발에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전력,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여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음.
 -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금년 9월초와 10월중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말까지 투자 타당성 평가를 완료할 계획임.

▣ 제1차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공장 현장 방문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8월 7일(화)~11일(금)까지 우리측이 제공하는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될 평양 인근의 ‘평양방직공장’ 외 3개 공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사항들을 협의하였음.
 - 이번에 방문한 공장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측이 제공하는 원자재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남북협회는 이번 방문 이후에도 7월 7일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과 기술지원을 금년 중에 3차례(9월, 11월, 12월) 추가로 실시할 예정임.



4. 평가

-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제고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 피부에 와 닿는 의복 및 신발·비누 등의 원자재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 우리측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공업 원자재와 관련, 해외 조달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고무반죽(생지)등 국내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우리 국내 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음.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이라는 남북 상생의 新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참 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 달러), 신발(4,200만 달러), 비누(1,100만 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제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

(1.4D×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 — 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자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제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 · 수량 · 가격은 《부록2》와 같이 한다.

상환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의 인도 · 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시기의 국제시장가격 (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 · 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룽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등의 광산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 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7월 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 김 형 석

실장 리 영 호

2·13 합의 이행 현황

1. 대북 중유 5만 톤 지원 (7.12~8.4)

- 남과 북은 6자회담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른 긴급 에너지 제공 관련에서 중유 5만톤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29일(금)~30일(토)까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음.
- 우리측은 중유 5만톤을 바다를 이용하여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선봉항(35,000톤)과 남포항(15,000톤)으로 분산하여 받기로 하였음.
* 이번 중유 5만톤 제공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라는 비핵화 공약을 북측이 이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7월 12일(목) 울산항에서 북측 선봉항으로 보낸 중유 6,200톤을 시작으로 7월 29일(토)까지 중유 5만톤 제공을 완료하였음.
- 북측은 제1항차 중유 6,200톤이 선봉항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영변 핵 시설 가동 중단을 통보해 왔음.
- 중유 5만톤 긴급 제공으로 북핵 불능화 초기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남북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2.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개최 (8.7~8)

- 6자회담 산하 실무그룹 회의 중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제2차 회의」가 8월 7일(화)~8일(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8일(수)~20일(금)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8월 중 5개 실무그룹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임.
- 금번 회의에서는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공될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의가 있었음.
- 북측은 이번 회담에 전문 경제관료 3명을 대표단에 포함시켜 매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했으며, 각 대표단들은 전체회의와 양자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실무적이고 진지한 협의를 하였음.
- 금번 회의는 냉전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3.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8.16~17)

- 핵시설 불능화 방안 협의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가

심양에 있는 우의빈관(友誼賓館)에서 8월 16일(목)~17일(금)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는 ‘중간 단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하여 북측이 이행해야 하는 두가지 의무, 즉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
- 북측은 ‘완전한 신고’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불능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준비를 많이 해왔으며, 북측이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
- ‘신고와 불능화’의 순서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안전문제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다른 대표단들도 비핵화의 모뎀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순서 문제에 대해서 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음.
- ‘신고와 불능화’를 시간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이 ‘지체없이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협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참 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2·13합의)

행 목		내 용										
1항	공동목표	한반도비핵화 조기이행										
	이행원칙 재확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										
2항	초 기 단 계	<table border="1"> <tr> <td rowspan="3">북 족 이 행 조 치</td> <td>영변핵시설의 폐쇄</td> </tr> <tr> <td>IAEA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td> </tr> <tr> <td>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목록 협의</td> </tr> <tr> <td>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착수</td> <td>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td> </tr> <tr> <td>대북 보상 조 치</td> <td>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td> </tr> <tr> <td>이행시한</td> <td>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td> </tr> </table>	북 족 이 행 조 치	영변핵시설의 폐쇄	IAEA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목록 협의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착수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대북 보상 조 치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이행시한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
북 족 이 행 조 치	영변핵시설의 폐쇄											
	IAEA사찰단의 입북 및 감시활동 재개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목록 협의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착수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대북 보상 조 치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이행시한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											
3항	실 무 그 룹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설 치</td> <td>초기조치 및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5개 실무그룹(W/G) 설치 -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td> </tr> <tr> <td>9·19공동성명의 이행 위한 구체계획 수립</td> </tr> <tr> <td>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td> </tr> <tr> <td rowspan="3">임 무</td> <td>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td> </tr> <tr> <td>개최시한</td> <td>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td> </tr> </table>	설 치	초기조치 및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5개 실무그룹(W/G) 설치 -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9·19공동성명의 이행 위한 구체계획 수립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	임 무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최시한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		
설 치	초기조치 및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5개 실무그룹(W/G) 설치 -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9·19공동성명의 이행 위한 구체계획 수립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											
임 무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최시한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										
	4항	중 간 단 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북 족 이 행 조 치</td> <td>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td> </tr> <tr> <td>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td> </tr> <tr> <td>대북보상조치</td> <td>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td> </tr> </table>	북 족 이 행 조 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대북보상조치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북 족 이 행 조 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대북보상조치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5항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초기조치 이행완료 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히 개최										
6항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협상 착수										